

---

#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

---

2020. 9.

# 목 차

## I 지원대상 관련

1.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.....	1
2.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.....	2
3. 지원제외 업종은 .....	4
4. 특별피해업종이란 .....	7
5. 지자체 재난지원금 수령 시 추가 지원 여부 .....	8
6. 정부 지원자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.....	8
7. 임시 휴업자 또는 세금체납자 지원 여부 .....	8
8.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여부 .....	8
9.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 지원 여부 .....	9

## II 자금신청 관련

10. 신청은 언제부터 .....	11
11. 신청 방법은 .....	11
12. 신청 및 지원 절차는 .....	12
13. 신청 준비서류 및 문의처는 .....	13
14.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여부 .....	13

### Ⅲ 지원금액 관련

- 15. 복수의 피해업종 영위 시 지급금액은 ..... 14
- 16. 추석 전 지급 가능 여부 ..... 14
- 17. 대표자 본인 계좌만 수령 가능 여부 ..... 14

### Ⅳ 매출감소 판단 관련

- 18.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기준은 ..... 15
- 19. 지난해 매출은 없고 올해 매출이 있는 경우 ..... 15
- 20. 올해 창업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 ..... 15

# I

## 지원대상 관련

### 1.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?

□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<sup>①</sup>(집합금지업종, <sup>②</sup>영업제한업종) 및 <sup>③</sup>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.

구 분		소상공인 여 부	매출액 규모	매출액 감 소	지원금액
특별 피해 업종	집합금지업종	○	무관	무관	200만원
	영업제한업종	○	무관	무관	150만원
일반업종		○	연 4억원 이하	○	100만원

○ '20.5.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, 실제 영업 중\*인 소상공인

\*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
### 관련 참고

#### < 지원 대상 >

① 특별피해업종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\* 기준

■ (집합금지업종)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

\* PC방,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(전국) + 학원·독서실·실내체육시설 등(수도권)

■ (영업제한업종) 수도권 음식점·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

⇒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(4억원),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

\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

② 일반업종 : '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'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

## 2. 소상공인 판단기준은?
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**소기업\*** 중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2조에 따라,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.

\*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(예) : 숙박·음식점업 10억원 이하, 도·소매업 50억원 이하 등

-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인 미만인 사업자
- 그 밖의 업종 : 5인 미만인 사업자

### 관련 참고

#### □ 주된 업종 및 매출액,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- **(주된 업종)**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(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)
- **(매출액)**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
  -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
- **(상시 근로자 수)** 임원(개인사업자는 사장, 법인은 등기이사),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,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
  -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  - 창업·합병·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

**참고**

**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**

**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**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매출액 기준	근로자 수 기준		
1. 식료품 제조업	C10	120억원 이하	10인 미만		
2. 음료 제조업	C11			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	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)	C20			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)	C25		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		
15. 가구 제조업	C32		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	5인 미만	
17. 수도업	E36			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80억원 이하	10인 미만		
19. 광업	B				
20. 담배 제조업	C12			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)	C13			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)	C16			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	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	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	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	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	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		
29. 건설업	F			50억원 이하	5인 미만
30. 운수 및 창고업	H				
31. 금융 및 보험업	K			30억원 이하	5인 미만
32. 도매 및 소매업	G				
33. 정보통신업	J			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)	E(E36 제외)				
35. 부동산업	L			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	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	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10억원 이하	10인 미만	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5인 미만		
41. 교육 서비스업	P			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	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		

### 3.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?

- 지원대상(①집합금지업종, ②영업제한업종, ③일반업종)에 해당되더라도, 사행성 업종, 변호사·회계사·병원 등 전문직종,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다만,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.
- 아울러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## 관련 참고

#### 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(14개 업종)

\*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』 제125조

- 학습지 교사, 방문 교사
- 대리운전 기사, 퀵서비스 기사, 택배기사, 건설기계 운전기사
- 보험설계사, 대출 모집인, 신용카드 모집인
- 방문 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, 가전제품 설치 기사
- 화물자동차운전사, 골프장 캐디

**참고**

**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(148개)**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<b>담배 도매업</b>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<b>약국, 한약국</b>
47859 중	<b>성인용품 판매점</b>
47911, 47912 중	<b>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</b>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
56211	<b>일반유희주점업</b>
56212	<b>무도유희주점업</b>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<b>부동산업</b> * <b>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</b> 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활동이 포함  * 단, <b>부동산관리업(6821)</b> ,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<b>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 가능</b> - 부동산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<b>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</b>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 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 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<b>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</b>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<b>복권 판매업</b>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<b>무도장 운영업</b>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 <sup>2</sup>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
▶ **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** 지원 불가

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▶ **기타** 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 가능

#### 4. 특별피해업종이란?(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)

- '특별피해업종'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(운영시간 제한, 배달·포장만 허용) 조치\* 대상 소상공인입니다.

\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

<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>

구분	해당 업종 및 시설
① 집합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전국) 콜라텍, 유흥주점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뷔페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실내집단운동, 실내스탠딩공연장, PC방</li> <li>(수도권) 학원(10인 이상)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실내체육시설</li> </ul>
② 영업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수도권)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(21시~05시 포장·배달만 가능),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아이스크림/빙수 전문점(포장·배달만 가능)</li> </ul>

- 다만, 8.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,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\* 예) 8.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15종(놀이공원, 게임장, 오락실 등)

#### 관련 참고

-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(중수본 발표기준)

구분	수도권	비수도권
집합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위험시설 12종*(유통물류센터 제외) 집합금지</li> <li>*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원(10인 이상)·독서실·스터디 카페·실내체육시설(헬스장, 당구장 등) 집합금지</li> <li>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추가</li> </ul>	○ 해당사항 없음
영업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 21시 이후 다음날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</li> <li>○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 포장·배달만 허용</li> </ul>	○ 해당사항 없음

### 5.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?

- 새희망자금(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(재난지원금 등)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.

### 6.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?

-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(복지부)· 긴급고용안정지원금(고용부)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-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.

### 7.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새희망자금은 '20.5.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며, 신청일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인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단, 휴업한 상태에서 정상 운영으로 변경하여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또한 세금체납자(국세, 지방세)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.

### 8.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?

-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
## 9.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새희망자금의 경우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,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- 외국인 사업자로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.

**참고**

**다수 사업장 운영 및 공동대표 시 신청·지원 기준**

구 분	신청·지원 기준			
① 다수사업장 영위 → 대표자 1회 지급	대표자	등록사업자	신청·지원	
	김사장	A기업(개인) B기업(개인)	A, B기업 중 1개만 가능	
② 다수사업장 중 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장 포함 → 대표자 1회 지급	대표자	등록사업자(매출)	신청·지원	
	김사장	A기업(6억원) B기업(2억원)	신청 불가 신청 가능	
③ 일반업종 및 특별피해 업종 모두 영위 → 최고액 1회 지급	대표자	등록사업자(업종)	신청·지원	
	김사장	A기업(특별피해) B기업(일반업종)	A기업 신청 가능	
④ 개인 및 법인 사업장 모두 영위 → 개인1인, 법인 각 1인 지급	대표자	등록사업자(형태)	신청·지원	
	김사장	A기업(개인)	김사장 신청 가능	
		B기업(법인)	B법인으로 신청 가능	
	C기업(법인)	C법인으로 신청 가능		
⑤ 공동대표 사업장 → 사업체당 1회 지급 * 1인 지정 동의서 필요	대표자	등록사업자	신청·지원	
	김사장, 박사장	A기업	김사장 또는 박사장 1명만 가능	
⑥ 공동대표 및 다수사업장 → 대표자 1회, 사업체당 1회 지급 * 각자 1인 지정 동의서 필요	대표자	등록사업자	신청·지원	
	김사장, 박사장	A기업	김사장은 A기업, 박사장은 B기업 신청 가능 또는	
	김사장, 박사장	B기업		김사장은 B기업, 박사장은 A기업 신청 가능

## II

## 자금신청 관련

### 10. 새희망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?

- (신속 지급) 9.23~24일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.24일(목)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다만, 원활한 신청·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(9.24~9.25)까지는 2부제(홀짝제)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 2부제(홀짝제) 접수 >

접수일	9.24(목)	9.25(금)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	짝수 (예 : 123-45-67890)	홀수 (예 : 123-45-67891)

- (확인 지급)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.16일(예정)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(2부제 접수)을 하시면 되고,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.26일(예정)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 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. 단, 원활한 신청·접수를 위해 5부제로 접수합니다. 정확한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.

< 5부제 접수 >

접수 요일	월요일	화요일	수요일	목요일	금요일	토·일요일 (공휴일 포함)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	1, 6 (예 : 123-45-67891)	2, 7	3, 8	4, 9	5, 0	휴무로 접수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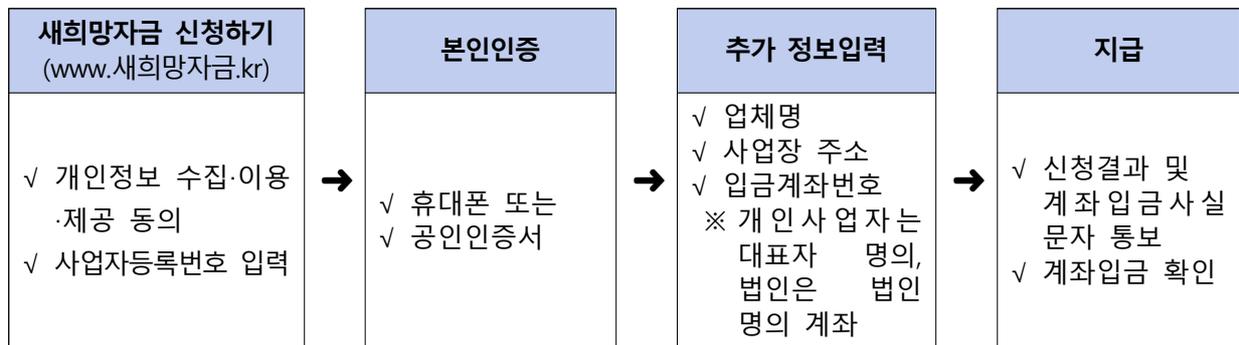
### 11.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(네이버, 다음 등)에서 “소상공인 새희망자금”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(www.새희망자금.kr)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하며,
- 방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(추석 직후 안내)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## 12.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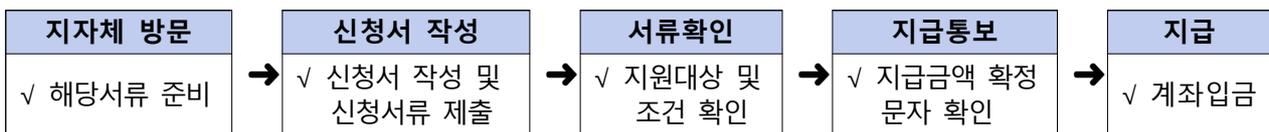
- **온라인 신청**(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: 일반업종, 특별피해업종 일부\*)
  - \* 국세코드로 구분이 가능한 집합금지 4개 업종(전국: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/ 수도권: 독서실, 실내체육시설), 영업제한 3개 업종(수도권: 제과점,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)
- 국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,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.
- 신청결과는 [새희망자금 홈페이지] - [신청결과 확인]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### < 온라인신청 절차 >



- **지자체 방문 신청**(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: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, 공동대표 사업장 등)
  - “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, 매출증빙서류, 통장사본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### < 방문신청 절차 >



### 13.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?

-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([www.새희망자금.kr](http://www.새희망자금.kr))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
-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.
  - 온라인 문의 : [새희망자금 홈페이지([www.새희망자금.kr](http://www.새희망자금.kr))] - [24시간 채팅상담] 이용
  - 전화 문의 : ☎ 1899-1082 (새희망자금 콜센터, 09~18시 운영)

### 14.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?

-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. 단,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-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,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  - \*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
  -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(고령자, 시각장애인, 중증환자 등)은 가족, 직원, 지자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합니다.  
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.
  - 휴대폰이 타인 명義이고,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거래은행에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
### Ⅲ

## 지원금액 관련

15.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. 피해업종 사업장이 두세 곳이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?

-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집합금지업종(200만원), 영업제한업종(150만원), 일반업종(100만원)

16.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?

-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, 특별피해업종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석 전에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.

17.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?

-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,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.

## IV

## 매출감소 판단 관련 (일반업종만 해당)

### 18.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'19년 이전 창업자는 '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, '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'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(감소율은 무관) 한 곳입니다.
- '2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한 자는 올해 6~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8월 매출액이 6~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(감소율은 무관)한 곳입니다.

< 매출 감소 판단기준 >

구 분		기준 매출액	비교 매출액
'19년 이전 창업자	일반과세자	'20년 1~6월 월평균 매출액	'19년 월평균 매출액
	간이과세자	'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* '21년 매출 신고시 확인	
'20년 창업자		'20년 8월 매출액	'20년 6, 7월 월평균 매출액

### 19. '19년은 매출이 없고 '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? ('19년에 창업했으나 '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등)

- '20년 매출이 '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,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# 20. 올 4월에 창업했지만,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 (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음)

-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